

#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정관

제정 2004. 6. 30 마포구청장인가 기획예산과-4520호  
개정 2005. 6. 24 규정 제36호  
개정 2006. 3. 13 규정 제45호

개정 2007. 1. 11 규정 제50호  
개정 2008. 1. 3 규정 제64호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당 공단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마포구 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 라 한다)가 위탁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당 공단은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 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공단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533-1”에 두고, 이사회 의결과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공단이 고시·공고할 사항은 서울특별시마포구보(이하 “구보” 라 한다), 서울특별시내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마포구 홈페이지 또는 공단의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다만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시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자본금)**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20억원으로 하되, 구가 현금 또는 현물로 전액 출자한다.

## 제 2 장 임원 및 직원

**제6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이사 7인 이내와 감사 1

인을 둔다.

- ② 공단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임면하되,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조례에서 정한 이사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 ③ 비상임이사중 당연직이사는 구의 기획재정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된다.(개정 2007.1.11)
- ④ 제3항의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 ⑤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되,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의 감사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 비상임감사를 겸임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7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② 임원의 결원으로 후임자가 선임되었을 때에는 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영 제57조 각호의 임기만료 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②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를 분장하며, 이사장 유고시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상임이사가 궐위중인 경우에는 당연직이사중 구의 직제에 의한 국장, 기타이사의 순으로 이를 대행한다.
- ③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단, 이사장은 그 직무 대행권자에게, 당연직이사는 그가 지정한 위임장을 휴대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 ④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부터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5.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제10조(조직 및 정원)** 공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조직은 별표1, 정원은 별표2로 하고, 그 세부내용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직원의 임면)** ①공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직원의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규정과 계약직직원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직원의 복무)**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정 등 복무관련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5조(임·직원의 보수)** ①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에게는 연봉제 및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보수와 직무수행에 따르는 실비를 지급한다.

② 비상임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사회에 출석하는 이사와 감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신분보장 등)** ①공단의 이사장 및 상임이사는 영 제56조제1항 각호의 1에 의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외에는 임기중 해임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구청장이 매년말 공단의 제반업무 추진결과를 평가하여 이사장 및 상임이사가 법·령, 조례 또는 공단의 제규정을 위반하여 인사·예산·회계·경영 등에 중대한 과오를 범하거나, 구청장의 적법한 업무지시를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거부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 하더라도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 ③ 공단의 직원은 인사규정으로 정하는 당연퇴직사유 또는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 또는 면직 시킬 수 있으며, 계약직 직원의 경우에는 계약직 직원규정과 채용 및 근로계약서 등에 따른다.
- ④ 공단의 직원은 제3항 이외에는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처분 등 기타 불이익처분을 받거나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제17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공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직원 중에서 공단업무의 일부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19조(고문 등)** ①이사장은 공단의 업무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고문 또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이사장은 제1항의 고문,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③제1항의 자문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제3장 이사회

- 제20조(설치 및 구성)** ①공단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1조(기능)** ①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과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조직, 기구,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 자금의 차입, 공단체의 발행 및 상환과 차관에 관한 사항
  6.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과 임대차에 관한 사항
  7. 재산 재평가액의 확정
  8. 대행사업에 관한 위탁계약 체결
  9. 기타 공단의 업무운영에 필요하다고 사장이 인정하는 사항
- ②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는 참여할 수 없다.

**제22조(소집 및 의장)**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2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하며, 이사장은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비상임당연직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회의목적·개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23조(의결방법 등)**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공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2. 공단의 경영목표, 자금계획 및 운영계획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
5. 조직, 기구,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에서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사항중 집행상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을 보류하고 1회에 한하여 1주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서면의결)** 이사장은 긴급한 의안으로서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의사록)**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 날인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제26조(운영)**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 4 장 사 업

**제27조(사업)** 공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업
2.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리·운영 사업
3. 견인보관소 관리·운영 사업
4. 마포문화센터 시설물관리 사업(개정 2008.1.3)
5. 마포농수산물시장 관리·운영 사업
6. 기타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가 위탁하는 사업
7. 제1호 내지 제6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제28조(대행사업 등)** ①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이사회 의결과 조례 제28조제1항 규정의 절차를 거쳐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과 조례 제28조제2항 규정의 절차를 거쳐 그 사업의 일부를 제

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조례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 제 5 장 재무회계

**제29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30조(예산 및 회계)** 공단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법 및 조례를 적용하고, 기타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수입 및 정산)** 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구 세입으로 하며, 익월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공단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구에서의 전입금
2. 위탁자의 사업대행 수수료
3. 기타 재원

③공단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정산결과 미지급금, 예산이월금 등을 제외한 불용액은 구 회계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32조(결산)** 결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제33조(기금조성 등)** ①공단의 이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34조(자금의 일시 차입 등)** ①공단은 예산의 범위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 6 장 보 칙

**제35조(정관의 변경)** 공사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36조(업무상황의 공표)** ①이사장은 법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거 매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영 제44조제1항이 정한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37조(공무원의 파견요구 등)** ①이사장은 공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공단정원의 10분의 1 범위내에서 구청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단의 해당직위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4.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임원 임기)** 공단 최초임원의 임기는 2004. 7. 1부터 기산한다.

**제3조(최초 사업연도)** 공단의 최초사업연도는 2004.7.1부터 2004.12.31까지로 한다.

**제4조(설립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①공단의 설립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는 공단설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공단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

회계에서 지출하되 경비는 제1항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5조(경과조치)**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최초의 직제규정, 인사규정 및 보수 규정 등 공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부 칙(2005. 1. 24)**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3. 13)**

이 정관은 마포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정관의 개정으로 증원되는 일반직중 사무직 6급 3명과 일반계약직 6명중 1명 및 감원되는 고용직 11명중 6명에 대한 정원 조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7. 1.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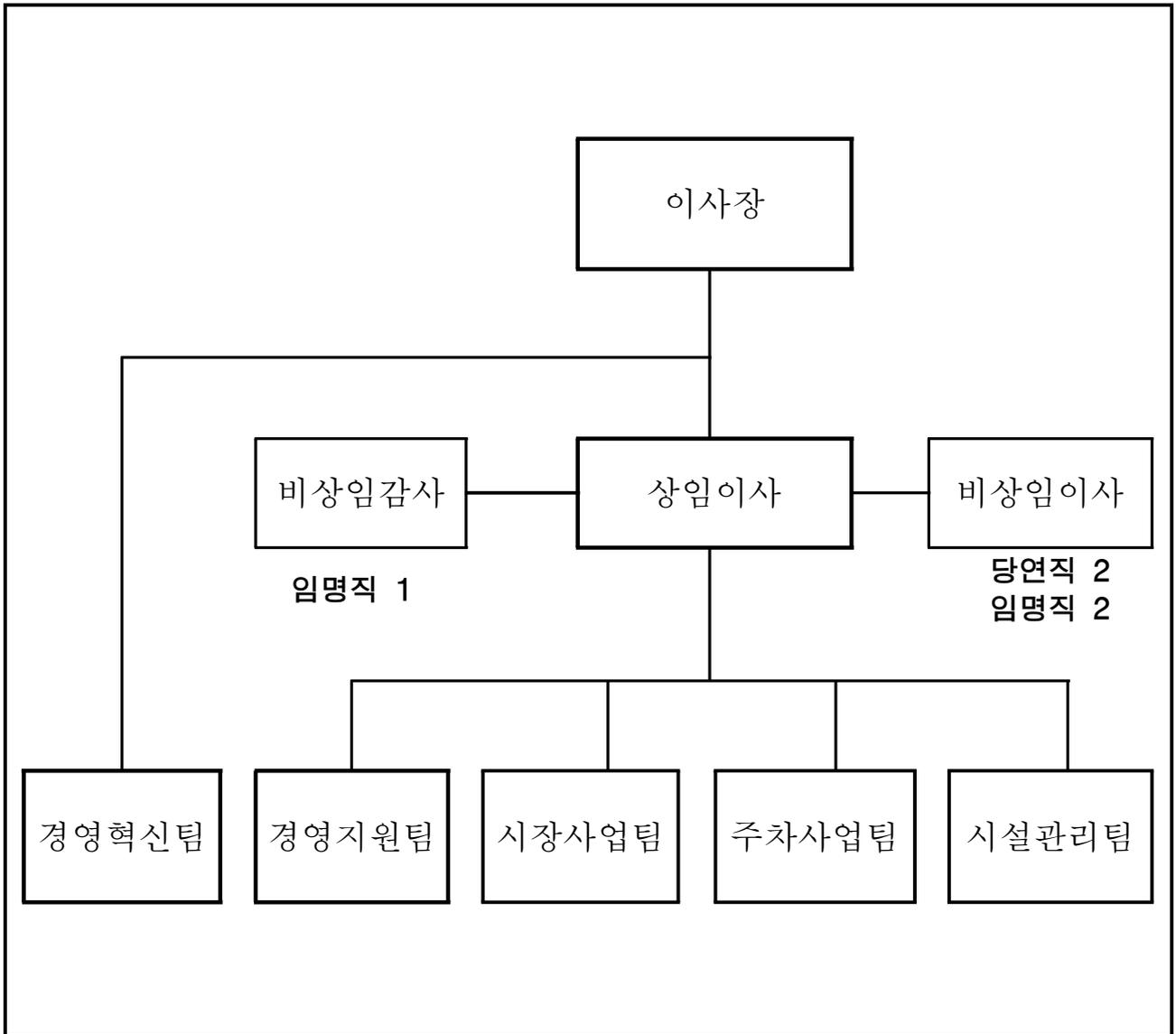
이 정관은 마포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 1. 3)**

이 정관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08. 1. 3)

## 기 구 표



[별표 2](개정 2005. 6. 24, 2006. 3. 13, 2008. 1. 3)

## 정 원 표

구 분	계	이사장	상 임 이 사	경 영 지원팀	경 영 혁신팀	시 장 사업팀	주 차 사업팀	시 설 관리팀	
계	134	1	1	12	5	11	74	30	
임 원	2								
일 반 직	계	40		10	5	5	10	10	
	사 무 직	소계	27		10	4	4	7	2
		2급	1		1				
		3급	5		1	1	1	1	1
		4급	5		1	1	1	2	
		5급	7		3	1	1	2	
		6급	9		4	1	1	2	1
	기 술 직	소계	8			1			7
		4급	2						2
		5급	2						2
		6급	4			1			3
	기 능 직	소계	5				1	3	1
		1급	-						
		2급	2				1	1	
		3급	3					2	1
	계 약 직	계	92		2		6	64	20
전 문 계 약 직		소계	14		2			6	6
		가급							
		나급							
		다급							
		라급	6					1	5
		마급	8		2		-	5	1
일반계약직	78					6	58	14	